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금고 외부 감사 의무화〉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2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장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3.
3. 회부연월일 : 2025.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 대출에 의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6조제4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산총액 300억 이상인 금고에 대하여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외부 감사) ① ~ ③ (생략) ④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76조(외부 감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u> ----- -----. ⑤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 또는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금고 중에도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이익금을 과대계상 또는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고에 대하여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음.¹⁾

1) 「새마을금고법」

제76조(외부 감사)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의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음.²⁾

[대규모 금고 외부 감사 제도 현황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법령규정	재량	① 자산 500억원 이상 ② 자산 500억원 미만 금고 중 자기자본 100분의 5 초과 이익금 과대계상 또는 손실금 과소계상	
	의무	자산 <u>3,000억원</u> 이상	자산 <u>300억원</u> 이상
운영		자산 3,000억원 이상 (매년) 자산 500억~3,000억 (격년)	자산 300억원 이상 (매년)

현행 법령에 따른 금고 외부 감사 의무화 제도는 2025년에 도입된 것으로, 새마을금고 연체율 증가나 부실·불법 대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2023년에는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및 연체율 증가에 따른 대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①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1.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제4항·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
2.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제4항·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금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
 - 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한 금고
 - 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고

2) 「새마을금고법」

제76조(외부 감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② 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된 것임.³⁾

그런데 현행 법령상 외부감사 의무 기준인 자산총액 기준 ‘3,000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2025년 6월말 기준 전체 새마을금고 1,269개소 중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는 254개소로 전체의 약 20.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새마을금고 전반에 대한 외부 통제를 확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외부 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 경영 등 문제·우려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생활과 서민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금융기관으로서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음.

[새마을금고 자산총계 통계 (25.6월말 기준)]

구분	전체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3,000억원 이상
개소	1,269개 (100%)	57개 (4.5%)	70개 (5.5%)	888개 (70.0%)	254개 (20.0%)

※ 자료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 재무통계

3) 국회입법조사처,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I」, 2024.

개정안과 같이 외부 감사 대상을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는 경우 현재 격년으로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의 금고(전체의 약 70%)가 매년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금고(전체의 약 5.5%)가 외부 감사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2025년 6월말 기준 전체 새마을금고의 95.5%가 매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외부감사의 대상을 사실상 새마을금고 전체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외부감사 기준을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령하고 있고,⁴⁾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조합장 임기 중 1회,⁵⁾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자산총액

4)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회계 및 결산) ⑤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4(외부감사대상 조합) 법 제4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경우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는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조합 모두를 외부 감사대상으로 지정하였음.

5)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생략)…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격년으로,⁶⁾ 산림조합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 자산규모 이상인 경우 감독기관의 명령 시 외부감사를 실시⁷⁾하도록 하고 있음.

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 (생략)… 본다.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생략)…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생략)…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회원 등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69조(감독) ⑦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1조(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⑤ 법 제1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액 300억원(2015회계연도까지는 3천억원)을 말한다.

7) 「산림조합법」

제123조(감독)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2조(산림청장 등의 감독) ② 법 제1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평균자산규모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통계자료에 의한다.

1.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자산규모 이상인 조합
2.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

[상호금융기관의 외부감사 실시 기준]

구분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등	수협	산림조합
자산 총액	500억원	3,000억원	300억원	500억원	300억원	조합 평균자산
감사 주기	2년	매년	매년	4년 (조합장 임기 중 1회)	2년	명령시

이와 관련하여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중앙회 등이 참석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가 개최되고 있음.

최근 3년간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동일업무-동일규제’의 원칙 하에 상호금융기관의 외부감사 기준과 주기를 단일화하여 규제 차이를 개선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음.

제22대 국회에서도 새마을금고 외에도 지역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상호금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발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⁸⁾

8) 상호금융기관의 의무감사 대상 및 주기를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및 ‘매년’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7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74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74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823)

[최근 3개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회의내용]

구분	내용
'23년 1차	① 상호금융업권 부동산 대출 현황 및 리스크 대응 방안 ②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개선 방안 → <u>외부감사 기준 강화 : 회계감사 주기 단일화(매년)</u> ③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④ 상호금융업권 조직문화 개선 방안
'23년 2차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점검
'23년 3차	①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안 ②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추진계획 → <u>외부감사 기준 강화 : 외부감사 대상 조합 범위 확대, 주기 단축</u> ③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조달 운용 동향 점검
'24년 1차	①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 점검 ②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 : <u>동일업무-동일규제</u>
'24년 2차	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 및 세부이행계획 ② 상호금융업권 주요 이슈별 현황 및 대응방안
'25년 1차	①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및 준비상황 공유 ②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비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③ 건전성·유동성 현황 및 준비상황
'25년 2차	① 상호금융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② 개별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③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강화) ④ 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 <u>외부 회계 감사 강화 : 외부감사 대상 조건 및 주기 일원화 (자산총액 300억, 매년)</u>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에 전문성 있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서 개정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음.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인 측면이 있고 감사수요 확대시 감사인력과 품질 저하, 비용 증가 등이 우려되며,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금고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회계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과 외부 감사의 효과성, 금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을 비교하여 도입 여부나 시기, 단계적 확대 가능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350